

	<h2 style="margin: 0;">대학 자체평가 규칙</h2>	규정번호	3-1-26
		제정일자	2010.05.01
		개정일자	2019.09.01
		개정번호	Ver.8
		총페이지	5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, 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,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및 본 대학교 학칙 제69조에 따라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.

제3조 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4조 (평가영역) 평가 영역은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 <개정 2019.09.01.>

제5조 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·시행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제6조 (평가지기) <삭제 2019.09.01.>

제 2 장 평가기구

제7조 (전담부서)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는 기획처로 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업무총괄
2.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
3. 자체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4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5. 자체평가 역량 향상

제8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행정처장과 행정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임교원과 외부인 중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8.12., 2014.11.25. 2019.09.01.>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9.01.>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1. 대학자체평가 관련 사항 심의
2. 삭제 <2014.11.25.>
3. 평가위원회 운영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삭제 <2010.08.12.>

제9조 (회의록)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9.09.01.>

제10조 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 (자체평가실무위원회) ①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(이하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0.08.12., 2014.11.25., 2019.09.01.>

② 실무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0.08.12.>

③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0.08.12.>

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10.08.12., 2013.06.17., 2014.11.25.>

1. 대학자체평가 계획 수립
2. 대학자체평가 지표의 개발, 관리 및 평가 <개정 2019.09.01.>
3.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4. 실무위원회 운영
5.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된 사항
6. <삭제 2019.09.01.>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0.08.12.>

⑥ 자체평가를 포함한 대외 평가 보고서 작성 TFT가 운영 중이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TFT를 실무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9.09.01.>

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2조 (평가계획수립) 전담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제13조 (평가자료제출) 행정부서 및 학부(과)는 실무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평가 관련 자료를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제14조 (평가실시) 실무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제15조 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 부서 및 학부(과)를 실사 할 수 있다.<개정 2019.09.01.>

제16조 (평가결과보고) 실무위원회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,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제17조 (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) 전담부서는 평가 종료 후 해당 부서 및 학부(과)에 결과를 통지하고, 본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 <개정 2014.11.25.>

제 4 장 보 칙

제18조 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할 수 있다.

제19조 (기타)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14.11.25.>